

노인 학대예방 및 신고 절차 안내

□ 노인학대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노인학대의 유형

○ 유형별 정의 및 대표적 행위

유형	정의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이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준 대가로 노인의 연금 일부를 가로챈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금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시설학대

- 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현황

※ 출처 :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2. 6.)

○ 주요현황

(신고건수) 2021년 전체 신고건수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

* 범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 목적의 모든 사례 포함

(학대건수) 일반사례 12,617건, 학대사례 6,774건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12.7%, 비신고의무자 87.3%

(재학대건수) 학대 6,774건 중 739건(10.9%)이며, 여성 노인 대상이 80.8% 차지

(성비) 전체 6,774건 중 여성 75.9%, 남성 24.1%로 여성이 남성의 약 3배로 나타남

(장소) 가정(88.0%), 생활시설(7.9%), 이용시설(1.3%) ... 재학대장소: 가정(96.9%)
 (행위자) 전체 8,423명 중 남성 5,413명(64.3%), 여성 3,010명(35.7%)
 ▶ 관계: 배우자(29.1%), 아들(27.2%), 시설 관계자 등(25.8%) ... 친족(68.8%)

○ 시설학대 현황

(시설학대 건수) 노인학대 6,774건 중 623건으로 9.2% (생활시설 536건(7.9%)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이용시설 87건(1.3%)로 전년대비 5.4% 감소
 (유형) 방임(35.6%), 신체적 학대(29.8%), 성적 학대(21.7%), 정서적 학대(10.3%) 등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44.0%, 비신고의무자 56.0%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0.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12.7% ...
 (성비) 전체 623명 중 여성 457명(73.4%), 남성이 166명(26.6%)로 나타남
 (행위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98.7% 차지

□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 (신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알게 된 즉시 신고
-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함
- (교육실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1577-1389) 및 각 권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찰서(112)*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앱*

* 피해노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조치

○ 노인학대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

- 신고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 피해의심노인 관련 정보
 - 학대피해의심노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학대피해의심노인 현재 상황(안정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학대 관련 정보: 학대발생 일시, 장소, 학대행위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 노인학대 신고접수 후 개입 절차 (시설학대)

○ 신고접수

- 학대피해의심노인 정보 및 학대상황 파악하여 사례 접수

○ 현장조사

- 학대발생 관련 장소 조사(CCTV, 사진, 동영상, 녹취, 관련 문서 등 학대정황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
- 학대 신고 관련자 조사(학대피해의심노인, 학대행위의심자, 목격자 등)

○ 노인학대 사례판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회의를 통한 노인학대 사례판정

○ 보고 및 조치

- 사례 판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결정

○ 평가 및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안부 확인,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확인 등의 사후관리 진행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안내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대상)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의무자

- (방법·이수시간) 자체(직장)·방문·온라인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노인인권교육

-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 대표자 및 종사자 전체가 교육 대상
- (방법·이수시간)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인터넷 교육 등)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온라인 교육은 6시간 이상)
- 제공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noinedu.or.kr/> 또는 02)3667-1389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또는 1600-8810
- 관련 법령
 1.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학대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합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